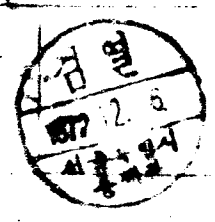


기 안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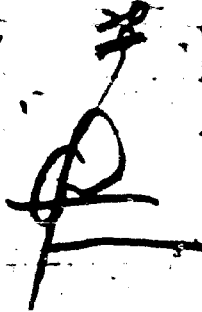
2/6
3630

분류기호 문서번호	110	(전화번호 > 60)	전달유형 전달사항
처리기간	세부사항		시상
시행일자			
보존년한			
본 문 기 판	내무주강 인사과강 조직관리계강	인사 조직	기획과/기획 (10월) 법무과강 (추진할지) 문서관리계강
기안책임자	문무부 > 10		조
전 수 장	구 신 조	발 신	수 계
각안참조			
<p>목 서울특별시 (보건소) 위임권결구강 개정 (위 1안)</p> <p>수 인 내부결재 시 류 총 인</p> <p>1.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보건소) 위임권결 구강을 개정하여 시행로서 첨내</p> <p>첨 부 서울특별시 (보건소) 위임권결구강 개정구강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끝</p>			



(비고안)

유 신 수 신 최 광 조
 새 목 각을 특별시 (보건주) 이인 선결유성 개성통기
 | 별칭과 같이 서울특별시 (보건주) 이인 선결유성을
 개성하였기 등지 하94 업무처리에 지9 없음바람
 개성년월일인 | 훈령번호 | 건 명 비 2
 1972. 10. 1 세 호 서울특별시 (보건주) 이인 선결유성
 김 씨 서울특별시 (보건주) 이인 선결유성 개성유성 1부 끝
 유 신 최

2002



서울특별시보건소 위임전결규정을 다음 과같이 개정한다.

197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강 양 특 식

서울특별시보건소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소장의 결재사항과 보건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과장, 기장 및 담당자의 결결하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를 명목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보건소장, 과장, 기장 및 담당자의 결재사항이 간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결재방법) (1) 보건소장, 과장, 기장 및 담당자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결재 구분이 의한 결결한다. 다만, 결결 사항이라도 중요 또는 **이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중요도에 따라 결결권자의 직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의 일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 결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결결 권자가 결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결결의 규정에 따라 결결한다.
(3) 이 규정의 규정된 결결관계에 의한 결결 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처하급 결결권자의 결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합의 및 협조) 결결사항중 타과, 기와 관련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과, 기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직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결재후반여부확인) 문서 통지관은 이 규정의 결결 구분에 의한 결결여부와 협조부서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이~~ 이

~~18.~~

U
T

Z
L

A
T

보건소전결과정

과제명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결재권장				협조권
			부장	과장	소장	소장	
각과 공동	부두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계배지)			○		
		2. ' (계별분장)			○		
		3. ' 관내 출장명령			○		
		4. ' 시간외 근무명령			○		
		5. ' 의출퇴가			○		
	일반사무	1. 경이한 사항에 대한 조 사보고 통지 조부 및 특주			○		
		2. 주한 사항에 대한 강제 자 소환 및 시류제출요구			○		
		인원	1. 각종 근무 결함권의 정비 2. 인원 시류의 이송 보완 통지 및 결과의 통보 3. 각종 피가의 취소			○	
	출장권리	1. 출장의 배정			○		

이차시류의 결재권자의 처상
합치로 한다 단 출장시
의상변경시원 경우는
합치한다

계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결	과	관	주	합		
			정	상	망	소			
연관봉사실	사무과	인사	1	소수	직원	의	소내	정보	0
			2	직원	의	전입	원활	내신	0
			3	인사	에	관련	제	소외	0
	부무		1	소내	단수	정비			0
			2	당직	근무	평명	및	일	0
				적	처리				0
			3	부무	에	관련	혁신	고	0
				처리					0
	일반사무		4	직원	(과	제	장	제외)	0
				의	휴가	허가			0
			5	과	제	장의	휴가	허가	0
			1	보건소	지	소의	감독	에	0
				관	에	사항			0
			2	농	의	입	명		0
			3	보건	에	관련	문제		0

		4 고등권 및 중시각원 의 신분증 발급	
	회계	1 예산회계 및 용도에 관 한 사항	
인원관리	일반사무	1 민원 안내 및 상담에 관 한 사항 2 직원복수 및 인사문제 3 문서의 수발 4 민원신고 센터 운영	
	식품유체 민원	1 식품영업면의 변경신고 2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 경신고 (영업 주소 상호 성명변경) 3 식품영업 쿠폰 (매입 재영업) 신고 4 식품영업 허가증 재고부 신청 5 식품영업 비탈원증 신청	

계	연외사무	세 부 사 업 명	결 산 액			비 고
			회계장	사무장	주 장	
연외사무	수출관리	1. 수출영업 방산 명세서 증 발행	0	0	0	
	연외	2. 수출영업 허가 (주입허가) 사실 증명	0	0	0	
		3. 수출허가 관리인 선임 (별첨) 신고	0	0	0	
	관정관리	1. 숙박영업 명의 변경신고	0	0	0	
		2. " " 크기 사본 (설명 주소 상호 영업일)	0	0	0	
		3. 숙박영업 주입 (주입허가 업) 신고	0	0	0	
		4. 숙박영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0	0	0	
		5. " " 허가 (주입허가) 사 실 증명	0	0	0	
		6. 관광목욕장 영업 명의 변경신고	0	0	0	
		7. 관광목욕장영업허가증발급신고 (설명 주소 상호 영업일)	0	0	0	

8 증정목무장 영업 투입 (폐업.취업)

신고

9 증정목무장 영업 허가증

제출부

10 증정목무장 영업 허가 (취업

폐업) 사실증명

11 이대용 영업 명목 변경

신고

12 이대용 영업 허가사본

변경 신고 (성명 주소 변경

상호 생년월일)

13 이대용 영업 투입 (폐업

취업) 신고

14 이대용 영업 허가증 제

출부 신청

15 이대용 영업 허가 (취업

폐업) 사실증명

의약관계 기관

16 각주 (의료종사자 면허업 의

약종면허업 약주제제의 제조업

특수종 면허업) 등록증 갱신신청

제	단위업무	세 부 사 업 명	총 계 권 장				행 조 치
			인	수	금	기	
		2 약주제제의 제조품목신고			0		
		3 약주명칭변경등록			0		
		4 약주관리약사 승인 신청			0		
		5 약주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신고			0		
		6 약주관리약사 퇴직신고			0		
		7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			0		
		8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 신 신청			0		
		9 의료기관 취업 (폐업) 신고			0		
		10 의료기관 개설 신고 공중 보건부 신청			0		
		11 의료업자 사망 (실종) 신고			0		
		12 미약취급자 면허증 교부신청			0		

13	미약취급지 (의약업자 관리지) 면허 등록 신청 변경	○
14	미약취급면허 유조 기간 갱신 신청	○
15	미약취급지 업무폐지 신고	○
16	미약취급지 면허종지 요부 신청	○
17	미약취급지 (판매지) 면허 요부	○
18	미약취급지 면허신청	○
19	미약 제고망 증명	○
20	부극물 관리지 (판매지) 변경신고	○
21	부극물 판매업 등록증 (허가증) 제고부 신청	○
22	부극물 (판매업 원조업 수출업) 취업 (퇴업 재취업) 신고	○

차	연차업무	세부사업명	결핵관리				중요도
			발생	진단	치료	예방	
		23. 두주물 판매업등록 (하) 사항 변경신청.			○		
		24. 조사원 유.폐업 신고	○				
		25. 시술소 (정글사 침구사) 폐기 신고	○				
	기타 민원	1. 보 건물 발급				○	
		2. " " 지 불급				○	
		3. 건강 진단서 발급				○	
		4. 건강 진단서 지 불급				○	
		5. 결핵진단서 발급				○	
		6. X-선 촬영 의뢰				○	
		7. 가족 영입 은사지 등록				○	
		8. 증거 방지 권역선상 변경신고				○	
		9. 배출 시설 설치자 영의 변경 신고				○	
취생과 사무장	일반사무	1. 업소 준입원 승인 및				○	

해표 신고 처리

2. 업소의 관할외 이전
신고의 경유처리

3. 각종 및 커셈 관계통제

식품 관계
민원

1. 식품영업 허가 (~~식품업~~
특의한 ~~영업장~~)

2. 식품영업 허가 사항(구조
변경, 장소이전) 허가

3. 식품제조 영업 허가

4. 식품제조 종무 허가

5. 식품판매업 허가

풍경 관계

1. 숙박영업 (호텔을 여관감)
허가

2. 숙박영업 (호텔을 여관감)
허가 사항 (장소이전
구조 변경, 증설) 변경허가
(호텔을 여관감) ..

3. 숙박영업 (일반 숙소 명칭
생년 불일) 허가사항 변경허가

계	단위사무	세부사업명	경제권자				합계
			총계	국	도	시	
		4 숙박영업 (여관을 별 연수. 회수) 회가		○			
		5 숙박영업 (여관을 별 연수 회수) 회가 시설 변경회가		○			
		6 공중목욕장 영업 회가		○			
		7 " " " 회가 변경회가		○			
		8 이 미용 영업 회가		○			
		9 " " (장소이전 구조 변경) 회가		○			
		10 이 미용 (성명 주소 상호) 변경 회가		○			
추진	일반사무	1. 무회가 식품업소 조사 등계		○			
		2. 지정 제목에 의한 영업업소의 위생정찰 부당		○			

	<p>지도단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리가 위생업소 단속 2. 위생업소 위생감찰 3. 부정 불량식품 단속 4. 식품주에 관한 사항 5. 식품 및 환경위생에 대한 지도단수 	<p>○</p> <p>○</p> <p>○</p> <p>○</p> <p>○</p>
<p>보건지도과 보건사업</p>	<p>보건일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에 관한 계몽교육 및 실천 2. 영유아, 임신부의 등록 및 건강관리 3. 구강위생에 관한 사업 4. 기생충 구제에 관한 사업 5. 보건간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종사원의 건강 관리 및 시설지도 7.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8. 지방병에 관한 사항 	<p>○</p> <p>○</p> <p>○</p> <p>○</p> <p>○</p> <p>○</p> <p>○</p> <p>○</p>

구	단위 업무	세 부 사 업 명	평가 순서		
			1차	2차	3차
의약과	의약일반	9 주민영양 실례조사 연구		○	○
		1. 가족계획에 관한 등록 계몽 선전지도		○	○
의약과	의약일반	2. 정관 및 부우루수술 의뢰서 발급	6	○	○
		1. 의료기관지도 단속		○	○
		2. 약업에 관한 지도 단속		○	○
		3. 미약사법 단속		○	○
		4. 의료업자 미약수업지도		○	○
방역과	방역일반	5. 기록의료업에 관한 사항		○	○
		1. 예방 선염병환자의 선 찰파 예방		○	○

		2. 단상 (2)의 보 원상 3. 관내 양의의 업무 지도 4. 방목작업 실시 5. 역학조사 6. 가리 방목의 변경 사항 7. 병피시험정사 8. X-선 촬영 및 필름관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환경과	공해일반	1. 공해에 관한 지도 연속 2. 공해업소에 대한 조치 3. 공해에 관한 일반 자료의 파악분석 4. 병사선 제해방식에 관 한 사항 5. 공해에 관한 시험	이 이 이 이 이

계	연차 업무	세 주 사 업 명	구분			합 계
			구분	구분	구분	
		분석의뢰 및 홍보				
	응답관리팀	1. 배출 시설 설치 허가				
		2. , , 설치 허가 변경신고	○			
	업무관리팀	1. 의료기관 개설신고				
		2. 의료기관 신고 사항 변경신고				
		3.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				
		4. 의료장구 개설등록 관련 업무	○			
		5. 조산원 개업신고	○			
		6. 조산원 재개업신고	○			
		7. 시술소 (안마 접골 등) 개설신고				
		8. 시술소 (안마 접골 등) 이점신고				

약무관계인원

1. 약국 개설 등록
2. 약국 (약국상 권위증상) 이원 신고.
3. 약종상 (한약 처방) 적자
4. () 영업장소 이원 허가
5. 투약권 판매업 등록
6. () 허가
7. 처방중도매상 허가
8. 이약 회합 자적 성질차 소지 마약 신고
9. 마약 양도 양수 승인 신청
10. 사고 마약 폐지 허가



40-5197/45

회 령 서

서울특별시 위생진흥국 청 계청국 청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1972년 9월 1일

위원장 노수국 장 신 (인)

위원 보건행정과 장 권 백 (인)

" 보건예방과 장 유우현 (인)

" 사회과 장 이재환 (인)

" 의학과 장 신현철 (인)

" 부녀과 장 최은경 (인)

" 환경과 장 오영기 (인)

" 아동과 장 변희순 (인)

1972, 9, 30

도행 485

수신 내무국장

참조 인사과장

제목 위임전결 규정 규정 개정 심의

1. 위임전결 규정 규정 개정안을 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기 제출합니다.

첨부 1. 보건사회국 전결규정 규정 개정의결안 1부

2. 보건소 전결규정 규정 개정 의결안 1부. 끝.

보건행정과

장 201
(5)



0377